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

2017년도 4분기



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

이은형

2018. 1









2017년 4분기

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

2018. 1

이은형 책임연구원 (eunhyung@ricon.re.kr)



요 약

- [2017년 4/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]는 58.3으로 하락했지만, 전년 동기와는 비교적 유사한 수준임. 이러한 수치는 수주급감같은 건설경기의 악화보다는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
- [2018년 1/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]은 40.5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 하지만 부정적인 선행지표들의 감소수준 및 분양예정물량 등을 살펴본다면, 실제 1분기의 건설경기는 이번 전망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
- [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]으로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'지역경제의 활성화(40%)'가 최다 응답이었음. 그 다음으로는 '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(28%)', '입・낙찰제도의 개선(18%)', '민간투자 활성화(10%)'와 '부동산규제완화(2%)'의 순으로 나타남.
- [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]은 '수주부진(38.9%)'과 '인력난·인건비 상승(24.2%)'이 가장 많았음. 결과적으로 '인력난과 인건비'는 2017년 내내 수주부진에 이은 전문 건설업체들의 두번째 애로사항으로 집계됨.
- [자금사정지수]는 연이어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 [자금조달 방법]은 '대표자 개인자금(67%)'이 압도적으로서 지난 분기보다 응답비율이 증가했으며, 그 다음은 금융기관 차입(27%)으로서 종전과 다름없이 이들의 응답비율이 절대적인 것으로 집계됨.
- [공사수주지수]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크게 하락함. 다음 분기에는 원도급은 소폭 상승, 하도급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됨. [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]는 원도급공사 24일, 하도급공사 42일이었으며 [공사대금의 수령형태]는 '전액 현금(89%)'과 '현금+어음(11%)'만이 답변됨.
- [공사대금수금지수]는 지난 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, 다음 분기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 [수령어음 평균만기일]은 원도급공사에서는 응답업체의 70%가 '60일 이내'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했지만, 하도급공사에서는 67%였음(90일 초과 장기어음 비율은 12%). [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]은 '만기일까지 보유(39%)'한다가 다수 응답이었으며, 그 다음으로는 '자재·장비비 등으로 유통(33%)', '시중은행 할인(17%)' 이었음.

- [기술·기능인력 수급지수]는 지난 분기보다 하락, [인건비지수]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. [자재·장비수급지수]는 소폭 하락한 반면 [자재비지수]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- [이중계약서 작성] 경험은 7%가, [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]은 7%, [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]는 11%가 경험한 것으로 집계됨. [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]의 사용비율은 88%, [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]은 주로 1~2회였음.
- [하자담보책임기간]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19%, [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]의 기존보다 조금 하락한 37%, [계약이행보증서/하자보증서 발급기관]을 특정업체로 강요받았다는 경험은 7%가, [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%초과 강요]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16%, [하자보수보증율 5%초과 강요]는 5%, [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] 사례가 있다는 7%였음.
- [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]의 교부시점은 '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(56%)'와 '하도 급계약 체결시(28%)'가 다수응답임. [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]는 '31~100위 업체'가 최다 빈도였음. [미교부 사유]로는 '원사업자와 합의(20%)', '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(10%)', '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지만 실제 교부가 안됨(10%)', '원사업자의 교부거부(10%)'의 순으로 나타남.
- [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]는 5%가, [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]는 4%만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. [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]을 위해서는 '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(38%)'하는 방안과 '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(38%)'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.
- [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]는 96%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교부한 것으로, [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] 사례는 9%로 집계됨. [특정 보증기관의 계약 이행보증서 요구이유]는 '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(42%)'하기 때 문이 압도적임. [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(위약벌)로 규 정해 계약을 체결]한 사례는 17%임.
- [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]는 본문의 〈표-38〉에 정리됨.

I 조사개요

1. 조사배경 및 목적

-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.
-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설문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. 그리고 경제통계로 포 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 건설업 경기실사지수1)를 활용함.
- 원·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,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 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.

2. 조사내용

- 2017년도 4/4분기의 전문건설업 실태와 기업경영상의 애로점을 조사하기 위해 총 11개 항목,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함.
 - 건설경기전망,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, 공사수주, 공사대금 수령, 하도급 불공정거래, 기술·기능인력 수급, 자재·장비 수급,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, 하도급대금 지급보증, 계약이행보증으로 구성됨.

3. 조사대상 및 방법

○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·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에 재직 중 인 289명의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현황조사를 위한 자계식 설문조사를 실시함.

¹⁾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(재)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이용함

- 설문지를 배포한 289개사는 수도권 업체가 89개사(30.8%), 지방권 업체는 200개사 (69.2%)로 구성되며, 기업규모와 본사 소재지(수도권·지방권)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.

〈표-1〉설문조사 내용

 구 분	조 사 내 용
건설경기(전문건설업) 전망	①경기전망 ②경기활성화 대책
경영일반 및 자금사정	③기업경영 애로사항 ④자금사정 전망 ⑤자금조달 방법
공사수주	⑥공사수주 전망
공사대금 수령	⑦대금수령 소요일 ⑧수령형태 ⑨수금전망 ⑩수령어음 평균만기일 ⑪어음의 현금화 방법/할인율
하도급 불공정거래	②이중계약서 작성경험 ③불공정 특약조항 유무 ④부당감액 피해사례 ⑤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유무 ⑥전자 입찰시 재입찰 ⑰하자담보책임기간 ⑧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령 ⑨지금보증서 미수령 사유 ⑳계약 이행보증서/하자보증서 발급기관 지정 ②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초과강요 ㉑하자보수보증율 초과강요 ㉓무리 한 하자보수요구 ㉑공상처리/비용
기술·기능인력 수급	⑤기술·기능인력 수급전망 ⑥인건비 전망
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	<ul><li>② 자재·장비 수급전망 ❷ 자재가격 전망 ❷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</li><li>약서 사용</li></ul>
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	③ 발주자/원도급자로부터의 부당피해 ③ 공사수주 및 계약단계 ② 시 공단계 ③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단계 ④ 유지관리단계 ⑤ 자재·장 비업자로부터의 부당피해 ⑥ 기타 건설공사 수행 관련
하도급대금 지급보증	③ 지급보증서 교부시점 ③ 원사업자 규모 ③ 미교부사유 ④ 변경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 교부 ④ 어음만기일에 따른 지급보증서, ④ 지 급보증서 교부율 상향
계약이행보증	④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 교부시점 ④특정 보증기관 강요 ⑤특정 보증기관 강요사유 ⑩현장설명서 특기조건의 전액보상 규정
건설기계보증	<ul><li>④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용지급보증서 미발급사유계약이행보증서 수령 용계약이행보증서 미수령사유 60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점</li></ul>

# Ⅱ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분석

## 1. 2017년 4/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2018년 1/4분기 전망

- [2017년 4/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]는 58.3(70.8점→58.3점)으로 지난 3/4분기보다 하락했지만, 전년 동기와는 비교적 유사한 수준임.2) 이러한 수치는 공사수주의 급감같은 건설경기의 악화보다는 오히려 계절적 요인 등에 더욱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〈표-2〉.
  - 실제로 2017년 4분기의 전문건설업 수주액(추정)을 살펴보면,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의 공사수주액만이 전년 동월보다 다소 감소했을 뿐 전반적으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 현저한 수준의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음. 참고로 종합건설업의 4분기 수주액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한 정도였음.
- 다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4분기의 건설투자성장률은 -3.8%로서 이는 전년 동기 (-1.2%) 이후로 나타난 첫 마이너스 성장(분기)임. 여기에 전 분기의 건설투자성장률(1.5%) 수준까지 감안한다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이같은 경기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느꼈을 수 있음.
-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문건설공사의 4분기 수주액은 매월 꾸준히 급감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을³⁾ 이번 4분기에 대한 응답업체들의 체감정도에 더해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. 이는 곧 동계비수기를 앞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 무리가 없을 것임.

〈표-2〉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추이 및 전망

	2016년	2016년	2017년	2017년	2017년	2017년	2018년
	3/4분기	4/4분기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1/4분기
경기실적(BSI)	56.3	61.6	70.0	67.8	70.8	58.3	40.5(전망)

²⁾ 참고로 지난 4분기에 해당하는 2017년 10월, 11월, 12월의 월별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각각 73.5, 62.7, 62.0임

^{3) 10}월에서 12월로 갈수록 월별 수주액이 급감하지만, 다음 해 1월이 되면 다시 수주액이 늘어나는 양상 도 반복해서 보여오고 있음

- [2018년 1/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]은 40.5로 이번 4/4분기에 이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〈표-2〉. 하지만 2018년의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의 근거가 되는 선행지표들의 감소수준과 분양예정물량 등을 살펴본다면, 실제 1분기의 건설경기는 이번 전망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⁴〉.
  - 2017년의 주택 인·허가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감소폭은 약 10% 수준임. 건축허가면적도 지난 2015년 이후로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014년 이전보다는 큰 상황임.
  - 또한 정부의 부동산규제 등으로 인해 2017년에 계획되었던 민간의 아파트분양물량이 금년으로 이월되는 등에 따라 오히려 금년 분양물량의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음. 이는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물량과도 연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.
  - 물론 건설투자의 '급격한 감소'5)로 인한 건설경기의 악화에 대한 우려도 꾸준하게 제기되고는 있으나, 그런 식의 논리는 최근 몇 년간의 건설경기 호황에 비추어본다면 설득력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임. 심지어 일각에서는 금년에 건설경기가 하향하는 원인의 하나로 주택과잉공급을 지적하는데, 이러한 견해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가부족한 것에서 기인함.
  - 최근 부동산대체투자가 기업들의 신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, 도시재생 및 지역 균등발전같은 정부정책의 상당수가 건설공사물량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, 금년에도 주요 건설사 등의 실적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1분기의 경기전망이 암울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.
- [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]으로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'지역경제의 활성화(40%)'가 최다 응답이었음. 그 다음으로는 '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(28%)', '입·낙찰제도의 개선(18%)', '민간투자 활성화(10%)'와 '부동산규제완화(2%)'의 순으로 나타남 〈표-3〉.

⁴⁾ 더구나 전문건설공사의 1분기 수주량은 매월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

⁵⁾ 다만 정부의 SOC예산 감축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발주계획이 줄어든 공공기관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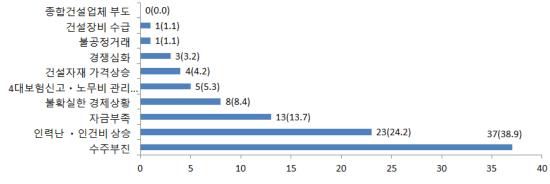
	`16. ₄	4분기	`17.	1분기	`17.	2분기	`17. 3	3분기	`17. <i>4</i>	4분기
공공발주 확대	23	(27)	19	(27)	25	(41)	20	(31)	14	(28)
민간투자 활성화	10	(12)	5	(7)	6	(10)	6	(9)	5	(10)
부동산 규제 완화	2	(2)	1	(1)	1	(2)	2	(3)	1	(2)
입·낙찰제도 개선	5	(6)	11	(16)	7	(11)	8	(12)	9	(18)
지역경제 활성화	44	(51)	34	(49)	21	(34)	27	(42)	20	(40)
기 타	2	(2)	0	(0)	1	(2)	2	(3)	1	(2)

〈표-3〉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(건, %)

## 2.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

- [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]은 '수주부진(38.9%)'과 '인력난·인건비 상승 (24.2%)'이 가장 많았음. 결과적으로 '인력난과 인건비'는 2017년 내내 수주부진에 이은 전문건설업체들의 두번째 애로사항으로 집계됨 [그림-1].
  - 그 다음으로는 자금부족(13.7%), 불확실한 경제상황(8.4%), 4대 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(5.3%), 건설자재 가격상승(4.2%), 경쟁심화(3.2%), 불공정거래(1.1%), 건설장비수급(1.1%)의 순으로 나타남. 이번 조사에서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를 지적한 응답업체는 나타나지 않음.





[그림-1]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(2017년 4/4분기)

- 「자금사정(자금조달)지수]는 55.1(65.6→55.1점)로 지난 3/4분기에 이어하락했으며, 다음 2018년 1/4분기에는 38.0으로 연이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⑥〈표-4〉.
  - 참고로 국내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2018년도의 건설산업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짐. 하지만 이들의 평가는 본래 대출 등의 경우에 통상적인 제조업보다 건설업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, 동시에 개별 건설기업들의 신용등급 등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.

〈표-4〉 전문건설업 자금조달지수 추이 및 전망

	2016년	2016년	2017년	2017년	2017년	2017년	2018년
	3/4분기	4/4분기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1/4분기
자금조달	54.7	57.0	67.1	71.7	65.6	55.1	38.0(전망)

- [자금조달방법]은 '대표자 개인자금(67%)'이 압도적으로서 지난 분기보다 응답비율이 증가했으며, 그 다음은 금융기관 차입(27%)으로서 종전과 다름없이 이들의 응답비율이 절대적인 것으로 집계됨. 소수 응답으로는 '보유자산 매각(2%)'이 있었음 〈표-5〉.

〈표-5〉전문건설업체의 자금조달방법 (건. %)

	`16. <i>4</i>	4분기	`17.	1분기	`17. :	2분기	`17. 3	3분기	`17. <i>4</i>	4 <del>분</del> 기
금융기관 차입	26	(31)	25	(38)	24	(40)	20	(31)	13	(27)
사채시장 조달	1	(1)	0	(0)	2	(3)	0	(0)	0	(0)
회사채 발행	1	(1)	0	(0)	1	(2)	1	(2)	0	(0)
상생협력펀드 활용	0	(0)	0	(0)	0	(0)	0	(0)	0	(0)
대표자 개인 자금	53	(62)	38	(58)	27	(45)	39	(61)	33	(67)
보유자산 매각	2	(2)	1	(2)	2	(3)	2	(3)	1	(2)
기타	2	(2)	2	(3)	4	(7)	2	(3)	2	(4)

⁶⁾ 하지만 자금사정은 개별 기업마다 다른 것이 현실임. 이번 조사에서도 일부 업체는 미수금회수가 원활함에 따라 자금여력은 충분하다고 답할 정도였음

#### 3. 공사수주와 공사대금 수금

- [공사수주지수]는 원도급이 40.8(53.8점→40.8점)로 지난 분기에 이어 크게 하락했으며, 하도급도 37.0(46.7점→37.0점)도 앞서와 동일하게 연이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⁷⁾ ⟨표-6⟩.
  - 4분기의 전문건설공사의 수주공사액은 3분기 대비 약 22%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. 이처럼 수주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, 전문건설업에서는 통상적으로 3분기 대비 4분기의 공사수주량이 감소한다는 점을 반영한다면 이번 조사의 지수하락은 충분히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임.
- 2018년 1/4분기의 공사물량지수 전망을 살펴보면 원도급은 2017년 4/4 분기보다 소폭 상승, 하도급은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.
  - 2018년 1월의 전문공사수주액이 전월보다 늘어난 추정⁸⁾되었음은 물론 그간 연초에 는 공사수주액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, 1분기의 공사물량지수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음.

#### 〈표-6〉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 추이 및 전망

	2016년 3/4분기	2016년 4/4분기	2017년 1/4분기	2017년 2/4분기	2017년 3/4분기	2017년 4/4분기	2018년 1/4분기
원도급	45.3	55.8	66.7	73.8	53.8	40.8	49.0(전망)
하도급	51.6	58.1	50.8	55.6	46.7	37.0	37.0(전망)

○ [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]는 원도급공사가 24일, 하도급공사가 42일 로 앞서의 3/4분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〈표-7〉. [공사대금의 수령 형태]는 '전액 현금(89%)'과 '현금+어음(11%)'만이 답변되었으며, '어음대체결제수단' 등의 기타 형태에 대한 응답은 전무하였음〈표-8〉.

⁷⁾ 참고로 국내 주요 종합건설사들은 2018년 공공시장에서의 수주목표를 전년과 동일하거나 감소한 수준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짐. 이는 추후 공공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수주에도 영향을 끼칠 것임

⁸⁾ 추정된 수주규모는 2017년 12월 대비 약 2.2배(전년 동월의 117%)수준

	<del>⟨丑−</del> 7	〉공사대금	수령	평균소요일수	(일)
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	--------	-----

	`16. 3분기	`16. 4분기	`17. 1분기	`17. 2분기	`17. 3분기	`17. 4분기
원도급 공사	24	24	26	25	24	24
하도급 공사	44	39	45	46	44	42

〈표-8〉 공사대금의 수령형태 (건, %)

	`16. 4분기		`17. 1분기		`17. 2분기		`17. 3분기		`17. 4분기	
전액 현금	54	(73)	45	(80)	37	(76)	46	(82)	41	(89)
전액 어음	1	(1)	1	(2)	0	(0)	1	(2)	0	(0)
현금 + 어음	13	(18)	8	(14)	9	(18)	8	(14)	5	(11)
어음대체결재수단	4	(5)	0	(0)	0	(0)	0	(0)	0	(0)
기타	2	(3)	2	(4)	3	(6)	1	(2)	0	(0)

- [공사대금수금]은 지난 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76.1(77.0점→76.1점)로 조사되었으나, 다음 2018년 1/4분기에는 68.9로서 이번 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〈표-9〉.
  - 2017년 2분기 이후로 공사대금수금지수가 꾸준히 하락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. 이는 현재의 건설시장에서 공사대금수금에 따른 문제는 공공공사보다는 민간공 사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이 요구된다는 의미로도 받 아들일 수 있기 때문임.

〈표-9〉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지수 추이 및 전망

	2016년	2016년	2017년	2017년	2017년	2017년	2018년
	3/4분기	4/4분기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1/4분기
원·하도급 전체	78.1	80.2	82.1	91.4	77.0	76.1	68.9(전망)

○ [수령어음 평균만기일]은 원도급은 '30일 이하(41%)'와 '31~60일(29%)'의 합계비율이 70%로 나타남. 그리고 하도급 공사의 평균만기일이 '30일 이하(28%)'와 '31~60일(39%)'의 합계비율은 67%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의 비율은 12%였음 〈표-10, 표-11〉.

〈표-10〉 원도급공사 수령어음의 평균만기일 (건, %)

	`16. 4분기		`17. 1분기		`17. 2분기		`17. 3분기		`17. 4분기	
30일 이하	20	(50)	17	(59)	14	(45)	15	(50)	7	(41)
31~60일	12	(30)	8	(28)	10	(32)	9	(30)	5	(29)
61~90일	7	(18)	4	(14)	6	(19)	4	(13)	3	(18)
91~120일	0	(0)	0	(0)	1	(3)	0	(0)	1	(6)
120일 초과	1	(3)	0	(0)	0	(0)	2	(7)	1	(6)

〈표-11〉하도급공사 수령어음의 평균만기일 (건, %)

	`16. <i>4</i>	4분기	`17. 1분기		`17. 2	2분기	`17. 3분기		`17. 4분기	
30일 이하	8	(20)	5	(17)	3	(10)	9	(27)	5	(28)
31~60일	20	(49)	17	(59)	14	(45)	11	(33)	7	(39)
61~90일	12	(29)	4	(14)	9	(29)	8	(24)	4	(22)
91~120일	1	(2)	3	(10)	5	(16)	4	(12)	1	(6)
120일 초과	0	(0)	0	(0)	0	(0)	1	(3)	1	(6)

○ [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]은 '만기일까지 보유(39%)'한다가 다수 응답이었으며, 그 다음으로는 '자재·장비비 등으로 유통(33%)', '시중은행 할인(17%)'이었음. '제2금융권 할인(0%)'과 '사채시장 할인(0%)'의 답한 업체는 없었음 〈표-12〉.

〈표-12〉 수령어음의 현금화 방법 (건 ,%)

	`16. 4분기		`17. 1분기		`17. 2	2분기	`17. 3분기		`17. 4분기	
시중은행 할인	8	(29)	10	(45)	9	(38)	6	(21)	3	(17)
제2금융권 할인	0	(0)	0	(0)	0	(0)	0	(0)	0	(0)
사채시장 할인	0	(0)	0	(0)	0	(0)	0	(0)	0	(0)
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	6	(21)	3	(14)	3	(12)	5	(17)	6	(33)
만기일까지 보유	10	(36)	3	(14)	9	(38)	14	(48)	7	(39)
기타	4	(14)	6	(27)	3	(12)	4	(14)	2	(11)

# 4. 기술·기능인력 및 자재·장비 관련

- [기술·기능인력 수급과 인건비지수]는 인력수급지수는 65.2(71.4점→65.2
   점)으로 지난 분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인건비지수도 34.1(41.0점→34.1점)로 지난 분기보다 하락함⁹⁾ 〈표-13〉.
  -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종에서는 기능인력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구인난도 심해 지는 것으로 알려짐.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인력수급이 어려운 것은 주로 아파트 등 주택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소요되는 숙련공들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함.
  - 인건비의 경우에는 이들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임금상승이 지속되고 는 있으나,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 비추어볼 때 이들의 임금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해본다면 인건비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못할 것이라는 점도 풀기 어려운 난제임.

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8년 3/4분기 4/4분기 1/4분기 2/4분기 3/4분기 4/4분기 1/4분기 인력수급 70.3 67.4 60.6 60.0 71.4 65.2 68.9(전망) 인건비 45.3 43.0 29.4 35.0 41.0 34.1 25.0(전망)

〈표-13〉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추이 및 전망

 ○ [자재·장비수급과 자재가격지수]를 살펴보면 2017년 4/4분기의 자재수급 지수¹⁰⁾¹¹⁾는 지난 분기보다 하락한 91.1(100.0점→91.10점)로 나타났으며, 자재비지수는 소폭 상승한 47.7(42.9점→47.7점)로 나타남〈표-14〉.

⁹⁾ 인력수급지수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건설인력의 수요로 인해 인건비지수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

¹⁰⁾ 동 항목은 2013년까지 0~120 사이의 조사치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90대로 하락해 그 추세를 대부분 이어왔으며 이번 조사에서 다시 100을 넘어섬

¹¹⁾ 통상 자재수급지수는 자재비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,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건설환경에서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임. 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조정받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인해 자재비는 공사원가상승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함

- 드라이모르타르같은 일부 자재의 수급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으며, 2017년 내내 논란이 지속된 골재수급문제도 단시일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임. 하지만 석고보드나 단열재,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등 전반적인 자재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려짐.

〈표-14〉 전문건설업 자재·장비 수급 및 자재비지수 추이 및 전망

	2016년 3/4분기	2016년 4/4분기	2017년 1/4분기	2017년 2/4분기	2017년 3/4분기	2017년 4/4분기	2018년 1/4분기
자재·장비수급	101.6	93.0	89.2	96.7	100.0	91.1	97.7(전망)
자재비	53.1	51.2	33.3	43.3	42.9	47.7	25.6(전망)

## 5. 하도급 불공정거래

○ [이중계약서 작성경험]은 응답업체의 7%가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〈표 -15〉, [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]은 7%가 〈표-16〉, [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]는 11%의 업체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함 〈표-17〉.

〈표-15〉이중계약서 작성경험 유무 (건, %)

	`16.	3분기	`16.	4분기	`37.	1분기	`17.	2분기	`17. 3분기		`17. 4분기		
경험있음	6	(11)	10	(12)	4	(6)	4	(7)	5	(8)	3	(7)	
경험없음	50	(89)	71	(88)	60	(94)	51	(93)	55	(92)	41	(93)	

〈표-16〉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유무12〉(건, %)

	`16.	3분기	`16.	4분기	`17.	1분기	`17.	2분기	`17. 3분기		`17. 4분기	
경험있음	5	(9)	6	(8)	5	(8)	5	(11)	6	(10)	3	(7)
경험없음	50	(91)	73	(92)	58	(92)	47	(89)	55	(90)	41	(93)

¹²⁾ 본 조사문항은 2014년 3분기부터 추가된 것임

〈표-17〉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 (건, %)

	`16.	3분기	`16.	4분기	`17.	1분기	`17.	`17. 2분기		3분기	`17. 4분기	
경험있음	6	(11)	11	(14)	9	(14)	7	(13)	5	(8)	5	(11)
	48	(89)	69	(86)	55	(86)	47	(87)	54	(92)	39	(89)

○ [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13)14)]는 '사용'한다는 응답이 88%, '미사용'은 7%, '수정·변경 사용한다'는 응답비율은 5%로 조사됨〈표-18〉. 업계 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미사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 계약서양식의 사용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임.

〈표-18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(건, %)

	`16. <i>4</i>	4분기	`17. <i>^</i>	1분기	`17. 2	2분기	`17. 3	3분기	`17. <i>4</i>	 4분기
사용	60	(75)	50	(77)	47	(82)	47	(77)	38	(88)
미사용	6	(8)	6	(9)	5	(9)	7	(11)	3	(7)
 수정·변경사용	13	(16)	7	(11)	4	(7)	5	(8)	2	(5)
기타	1	(1)	2	(3)	1	(2)	2	(3)	0	(0)

○ [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¹⁵]의 응답비율은 1회가 29%, 2회가 29%로 조사됨. 3회 이상 경험했다는 업체비율은 12%로 집계됨 〈표-19〉.

〈표-19〉 전자입찰 재입찰 경험횟수 (건. %)

	`16.	3분기	`16.	4분기	`17. 1분기		`17.	2분기	`17.	3분기	<b>`</b> 17.	4분기
1회	6	(29)	10	(26)	13	(38)	15	(48)	11	(39)	5	(29)
2회	5	(24)	16	(41)	12	(35)	7	(23)	8	(29)	5	(29)
3회	0	(0)	4	(10)	1	(3)	3	(10)	3	(11)	2	(12)
4회 이상	3	(14)	2	(5)	3	(9)	0	(0)	1	(4)	0	(0)
기타	7	(33)	7	(18)	5	(15)	6	(19)	5	(18)	5	(29)

¹³⁾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(2016.12.30. 개정)

¹⁴⁾ 소수이지만 하도급 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다는 원도급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도 조사에 참여함

¹⁵⁾ 여전히 전자입찰이 아닌 서면입찰에 주로 참여한다는 업체들도 있음

○ [하도급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]은 '법정기간보다 길다'는 응답이 19%, '법정기간과 동일'하다는 응답이 79%로 법정기간과 동일하다는 응답비율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〈표-20〉.

〈표-20〉하자담보책임기간(건, %)

	`16. 4분기		`17.	1분기	`17. 2	2분기	`17. 3	3분기	`17. <i>4</i>	4분기
법정기간보다 길다	24	(33)	18	(30)	16	(31)	14	(25)	8	(19)
법정기간과 동일	45	(63)	41	(67)	34	(67)	42	(74)	33	(79)
기타	3	(4)	2	(3)	1	(2)	1	(2)	1	(2)

○ **[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]**를 수령했다는 응답비율은 37% 〈표-21〉, **[미수령** 사유¹⁶**)**]로는 '하도급대금 직불현장(56%)'와 '이유를 알 수 없다(35%)'는 2가지 응답이 가장 많았음 〈표-22〉.

〈표-21〉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여부(건,%)

	`16.	3분기	`16. 4분기		`17 1분기		`17	2분기	`17 3분기		`17 4분기	
있다	23	(43)	34	(46)	29	(49)	23	(47)	26	(45)	16	(37)
없다	31	(57)	40	(54)	30	(51)	26	(53)	32	(55)	27	(63)

〈표-22〉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미수령 사유 (건, %)

	`16.	4분기	`17. 1분기		`17.	2분기	`17.	3분기	`17.	4 <del>분</del> 기
수급인이 보증면제업체	3	(7)	3	(8)	2	(7)	2	(5)	2	(6)
하도급대금 직불현장	20	(47)	19	(51)	15	(52)	23	(58)	19	(56)
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	4	(9)	5	(14)	1	(3)	1	(3)	1	(3)
이유모름	16	(37)	10	(27)	11	(38)	14	(35)	12	(35)

○ [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/하자보증서 발급기관]으로 특정업체(서울보증보험) 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업체 7% 〈표-23〉, [수급인의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율 10% 초과¹?)]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16%〈표-24〉, [수급인의 하자 보수보증율 5% 초과]를 강요받았다는 응답비율은 5%로 집계됨〈표-25〉.

¹⁶⁾ 일부업체는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계약하지 않는다면 공사계약을 하지 않기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수 령한다는 업체도 있었으나 이런 사례는 드문 경우임

¹⁷⁾ 원도급업체가 요구하는 보증율은 주로 10~20%. 이번 조사에서는 15~20%의 범위로 조사됨

#### 〈표-23〉 서울보증보험 강요 유무 (건, %)

	`16.	3분기	`16.	`16. 4분기		1분기	`17. 2분기		`17. 3분기		`17. 4분기	
있다	1	(2)	3	(4)	2	(3)	2	(4)	2	(4)	3	(7)
없다	53	(98)	71	(96)	59	(97)	48	(96)	55	(96)	39	(93)

#### 〈표-24〉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%초과 강요 (건, %)

	`16.	3분기	`16.	4분기	`17.	1분기	`17.	2분기	`17.	3분기	`17.	<del>4분</del> 기
있다	3	(6)	8	(10)	11	(18)	7	(13)	7	(12)	7	(16)
없다	51	(94)	69	(90)	50	(82)	45	(87)	50	(88)	36	(84)

#### 〈표-25〉하자보수보증율 5%초과 강요 (건, %)

	`16.	3분기	`16.	4분기	`17.	1분기	`17.	2분기	`17.	3분기	<b>`</b> 17.	<del>4분</del> 기
있다	2	(4)	5	(6)	4	(6)	1	(2)	4	(7)	2	(5)
없다	52	(96)	73	(94)	58	(94)	51	(98)	52	(93)	39	(95)

○ [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]는 지난 분기보다 줄어든 7%, 〈표-26〉, [산업재해발생시 공상처리 경험]은 12%로 늘어났으며, 응답업체들이 기재한 공상처리비용은 공상자 1인당 약 20~1,000만 원으로 나타남〈표-27〉.

#### 〈표-26〉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 (건, %)

	`16.	3분기	`16.	4분기	`17.	1분기	`17. 2분기		'17. 3분기		`17. 4분기	
있다	8	(15)	17	(22)	15	(25)	12	(23)	9	(16)	3	(7)
 없다	45	(85)	61	(78)	46	(75)	40	(77)	46	(84)	38	(93)

#### 〈표-27〉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경험 (건, %)

	`16.	3분기	`16.	4분기	`17.	1분기	`17. 2분기		분기 `17. 3분기		`17. 4분기	
있다	4	(8)	4	(5)	6	(10)	5	(9)	3	(5)	5	(12)
없다	49	(92)	71	(95)	53	(90)	49	(91)	55	(95)	36	(88)

○ **[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]**은 '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 내(56%)'와 '하도급계약 체결시(28%)'가 다수응답이었음. 반면 '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(6%)'했다는 응답도 여전히 나타났다는 점은 문제의 여지가 있음 〈표-28〉.

〈표-28〉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시점 (건, %)

	`17. 2	2분기	`17. 3	3분기	<b>`17.</b> 4	 1분기
하도급계약 체결시	9	(26)	7	(22)	5	(28)
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	13	(38)	20	(63)	10	(56)
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	1	(3)	2	(6)	0	(0)
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초과	0	(0)	0	(0)	1	(6)
기 타	11	(32)	3	(9)	2	(11)

○ [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 중 상대방 원사업자의 규모]는 시공 능력평가순위를 기준으로 '1~30위 업체'가 9%, '31~100위 업체'가 27%, '101~200위 업체'가 18%로 조사됨 〈표-29〉.

〈표-29〉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 중 상대방 원사업자의 규모 (건, %)

	`17. 1분기	`17. 2분기	`17. 3분기	`17. 4분기
시평 1~30위 업체	4 (16)	8 (25)	2 (9)	1 (9)
 시평 31~100위 업체	5 (20)	5 (16)	9 (39)	3 (27)
 시평 101~200위 업체	9 (36)	7 (22)	7 (30)	2 (18)
 기 타	7 (28)	2 (38)	5 (22)	5 (45)

○ [교부대상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]로는 '원사업자와 합의(20%)', '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(10%)', '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지만 실제 교부가 안됨(10%)', '원사업자의 교부거부(10%)'의 순으로 나타남. 종전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기타 응답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추후 이에 대한 추가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〈표-30〉.

〈표-30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대상인데도 교부받지 못한 이유 (건, %)

	`17.	1분기	`17.	2분기	`17.	3분기	<b>`17</b> .	4분기
원사업자의 교부거부	5	(23)	7	(21)	4	(17)	1	(10)
당사의 계약이행보증 미제출	0	(0)	0	(0)	0	(0)	0	(0)
지급보증서는 발급, 실제 교부안됨	2	(9)	4	(12)	5	(21)	1	(10)
원사업자와 합의	2	(9)	4	(12)	5	(21)	1	(20)
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	9	(41)	9	(27)	5	(21)	2	(10)
기 타	9	(41)	9	(27)	5	(21)	5	(50)

○ [추가공사/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] 는 응답업체의 5%가 계약변경내용에 따라 추가로 수령했다고 응답함에 따라 추가로 교부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95%로 증가함 〈표-31〉.

〈표-31〉 지급보증서 교부 뒤, 추가공사/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의 교부여부 (건, %)

	`16. <i>4</i>	`16. 4분기		1분기	`17. :	2분기	`17. 3	3분기	`17. 4분기		
있 다	2	(5)	4	(16)	7	(23)	6	(15)	1	(5)	
	40	(95)	21	(84)	23	(77)	26	(63)	19	(95)	

○ [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]는 응답업체의 4%가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됨. 〈표-32〉. 이는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〈표-31〉의 결과인 '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의 교부'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임.

(표-32) 어음(하도급대금)의 만기일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초과시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의 교부여부 (건, %)

	`16. <i>4</i>	4분기	`17. 1분기		`17. 2분기		`17. 3분기		`17. 4분기		
있 다	1	(3)	0	(0)	5	(18)	2	(5)	1	(4)	
 없 다	38	(97)	22	(100)	23	(82)	30	(73)	22	(96)	

○ [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]을 위해서는 '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(38%)'하는 방안과 '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(38%)'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. 그 다음으로는 '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(19%)'였음 〈표-33〉.

〈표-33〉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율을 높이는 방법 (건, %)

	`17.	1분기	`17.	2분기	`17.	3분기	<b>`</b> 17.	4분기
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	6	(18)	7	(20)	7	(17)	5	(19)
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	7	(21)	7	(20)	8	(20)	10	(38)
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	15	(45)	17	(49)	21	(51)	10	(38)
기 타	5	(15)	4	(11)	5	(12)	1	(4)

○ **[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]**는 응답업체의 96%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했다고 응답함 〈표-34〉.

〈표-34〉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한 시점 (건, %)

	`16.	4분기	`17.	1분기	`17.	2분기	`17.	3분기	<b>`17.</b>	4 <del>분</del> 기
하도급계약 체결시	50	(96)	35	(88)	35	(88)	37	(92)	27	(96)
없 다	2	(4)	5	(12)	5	(12)	3	(8)	1	(4)

○ **[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**¹⁸**)** 받은 사례는 응답업체의 9%로 집계됨 〈표-35〉.

〈표-35〉 특정 보증기관(서울보증보험)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 (건, %)

	`16. 4분	본기	`17.	1분기	`17. 2	2분기	`17. 3	3분기	`17. <i>4</i>	<del>1분</del> 기
있 다	7 (	(13)	13	(29)	10	(24)	7	(15)	3	(9)
없 다	48 (	(87)	32	(71)	31	(76)	40	(85)	30	(91)

¹⁸⁾ 동 문항은 원사업자가 서울보증보험을 지정한 경우를 의미함

○ [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]로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'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(42%)'하다가 가장 많았 음. 그 다음으로는 '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(25%)'와 '수급사업자의 계 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%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(8%)'의 순서로 나 타남〈표-36〉.

〈표-36〉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 (건, %)

	`17.	1분기	`17.	2분기	`17.	3분기	<b>`</b> 17.	4 <del>분</del> 기
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% 전액을 회수	13	(37)	10	(29)	7	(27)	3	(8)
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	4	(11)	6	(17)	8	(31)	5	(42)
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	11	(31)	12	(34)	7	(27)	3	(25)
기 타	7	(20)	7	(20)	4	(15)	3	(25)

○ [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(위약벌)로 규정 해 계약을 체결]한 사례는 지난 분기보다 늘어난 17%로 나타남〈표-37〉.

〈표-37〉하도급계약시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 등에 전액보상(위약벌)으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 (건, %)

	`16.	4분기	`17.	1분기	`17.	2분기	`17.	3분기	<b>`</b> 17.	4분기
있 다	0	(0)	2	(5)	3	(8)	3	(7)	5	(17)
없 다	51	(100)	39	(95)	35	(92)	40	(93)	24	(83)

○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종합한 결과는 〈표-38〉에 정리됨.

〈표-38〉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 (4분기 집계)

불공정거래의 발생단계	불공정거래 사례
발주자/원도급자	- 하도급대금직불요청시 발주자의 서류지연으로 인한 미지급 사례 - 하도급업체에게도 간접비증액의무제를 도입 - 부당한 공사비 삭감 및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정산 -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미정산 - 공기연장의 간접비를 미반영할 것으로 강요 - 설계도서에 미반영된 사항을 작업지시
공사수주 및 계약단계	- 과다물량으로 일단 계약 후 감액을 요구 - 사전에 없던 내용의 단가조정을 강요 - 특정 기관의 보증서 요구
시공단계	<ul> <li>작업지시서 등을 늦게 서면으로 교부</li> <li>의도적으로 구두로 작업지시 후 공사비에 미정산</li> <li>시공지시 후 변경계약에 미반영함으로써 분쟁을 야기</li> <li>설계변경을 구두지시 후 공사비에 미반영</li> </ul>
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단계	- 기성금의 확정시 유보비율을 과다하게 책정 -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성금 수령 지연 -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- 하도급자의 귀책없이 초과된 간접비에 대한 미정산
유지관리 단계	- 무리한 하자보수를 요구 - 전문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의 하자보수 요구